

#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(김정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0월 31일

발 의 자 : 김정태, 김인제, 우미경, 김기대,  
박운기, 우창윤, 유동균, 유찬종,  
이창섭, 전철수, 남창진, 이숙자,  
이석주 의원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미래를 주도해야 할 대학생 등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(청년 실업률 11.2% 4월 기준), 청년주거 빈곤, 청년인구 감소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도전정신과 청년들의 고유한 대학문화를 상실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.
- 이러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(52개 대학, 재학생 65만명, 연 졸업생 12만명, 특히 4천여개 등)을 활용하고 공공의 지원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 중심의 활력이 넘치는 대학가로 조성하기 위해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나. 사업의 핵심목표 기본방향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캠퍼스타운 계획(전략계획, 실행계획)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)
- 라. 대학제안사업 관련 규정(안 제8조)
- 마.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구성·운영 등 규정함(안 제13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·물적·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학”이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학(제5호에서 사  
이버대학은 제외한다) 중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대학을  
말한다.
2. “캠퍼스타운 조성 사업”이란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·물적·지적 자원  
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  
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“대학제안사업”이란 대학과 서울시에 소재하는 자치구(이하 “자치구”라 한다)가  
공동으로 제안한 다음 각 목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중 시장이 선정한 사업을  
말한다.
  - 가. 종합형 사업: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주거·문화·상권·지역협력의 종합적  
인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
  - 나. 단위형 사업: 대학별 특성·역량을 바탕으로 청년활동 증진을 위한 단위프  
로그램 사업

**제3조(기본방향)** ①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대학이 청년문제 해소와 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

②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.

1. 창업육성: 청년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
2. 주거안정화: 청년 주거환경 향상
3. 문화특성화: 대학가 청년문화 조성
4. 상권활성화: 대학주변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
5. 지역협력: 대학 및 청년의 지역사회 협력

**제4조(시장 등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대학은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대학의 경계를 넘어 도시의 상생 발전을 이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캠퍼스타운 계획

**제6조(캠퍼스타운 전략계획 수립 등)**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위하여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계획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대학중심 도시로서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캠퍼스타운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캠퍼스타운 전략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생활권계획과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캠퍼스타운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캠퍼스타운의 비전과 목표
2. 대학과 지역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방향
3. 대학과 자치구의 캠퍼스타운 관련 현황 및 진단
4. 기타 시장이 전략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**제7조(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)**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대학 및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해당 대학이 소재하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수립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, 실현가능성, 사업비 투입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③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개요
2. 사업대상지 현황
3. 사업의 조직 및 추진계획
4. 세부추진계획
5.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계획
6. 기대효과
7. 그 밖에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## 제3장 대학제안사업

**제8조(대학제안사업의 선정)** ① 시장은 공모를 통해 대학제안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.

② 대학제안사업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**제9조(사업지원)** ① 시장은 대학제안사업 공모에 선정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캠퍼스타운 사업과 유사한 국가의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대학이 국가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·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사업시행)** ① 대학총장과 자치구청장은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비용의 집행은 시장이 정하는 “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 집행·운영기준”에 따른다.

③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협약체결)**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청장 및 대학총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각 대학별, 사업별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12조(성과관리)** ① 자치구청장은 대학에 제7조제3항제5호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대학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, 시장의 요구사항

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## 제4장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

**제13조(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의 구성)** ① 시장은 원활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학총장이 참여하는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(이하 “정책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 사무국에(정책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되기 전에는 서울시에) 서면으로 참여의사를 제출한 대학총장과 시장으로 구성한다.

③ 회장은 정책협의회에서 호선한 대학총장 1명으로 한다.

④ 부회장은 정책협의회 위원인 대학총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
**제14조(정책협의회의 기능)**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
2.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
3. 그 밖에 캠퍼스타운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및 지원

**제15조(정책협의회의 운영 등)** ① 정책협의회는 정기협의회, 임시협의회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.

1. 정기협의회는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.
2. 임시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책협의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, 정기협의회 및 임시협의회를 주재한다.

③ 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의 회장이 소속된 대학에 사무국을 둔다.

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협의회에서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